

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(수정)

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 (예비·초기·도약) (예비)창업자 발굴·육성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자 『2022년 창업중심대학』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6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
※ 본 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창업중심대학(기관)을 모집하는 공고이며, (예비)창업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는 '22년 3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.

1

사업개요

사업 목적

-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청년창업 확산 및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

선정 규모

- 6개 대학 이내

< 창업중심대학 권역별 선정 규모(안) >

(단위 : 개)

권역	수도권	충청권	호남권	강원권	대경권	동남권	합계
선정 규모	1	1	1	1	1	1	6

* 권역구분 기준 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충청권(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), 호남권(광주·전북·전남·제주), 강원권(강원), 대경권(대구·경북), 동남권(부산·울산·경남)

**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학이 없을시 선발하지 않거나 권역별 선정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

□ 지원기간 및 예산

○ (지원기간) '22년 ~ '26년 (5년간)

- *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 (협약 기간 13개월 내외)
- **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○ (지원예산) 연 75억원 내외 (최대)

- *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, 창업 프로그램 및 창업중심대학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,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예산은 변경(차등지급)될 수 있음

< '22년 창업중심대학 지원내용 및 예산구성(안) >

구 분	내 용	예 산
창업기업 사업화 지원	• 예비-초기-도약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	60억원 내외
창업 프로그램 운영비	• 기본 및 자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	15억원 내외
전담조직 운영비	•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 등	

- * 창업 프로그램 및 전담조직 운영비 총 15억원은 예비, 초기, 도약 각 5억원씩 배정
- ** 사업별 세부 예산 배정은 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(V. 사업비 조성 및 사용계획) 참고
- *** 지원기간('22년~'26년) 중 연간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

2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 자격

-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 등을 보유한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
 - 창업중심대학 신청기관 권역 내 타 대학,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 기관*을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
- * '창업중심대학-협력 기관'의 구조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, 총 사업비 교부 및 관리·집행은 창업중심대학에서 일괄 수행 (협력 기관에 사업비 교부 불가)

< 창업중심대학 신청 자격 >

1.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(학교의 종류) 1,2호에 해당되는 대학

2. 『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』 제3조 1, 2, 3,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

※ 대학 본교(캠퍼스 포함)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

※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'대학'(본교 또는 분교) 명의로 가능함

○ (신청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

- ① 『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』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③ 최근 3년 이내('19.1.1 이후)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'협약의 해약'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'실패'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
- ④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
- ⑤ 신청기관의 대표자, 전담조직의 장, 전담인력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⑥ 교육부 "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"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3

신청 요건

1 (예비)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

※ 내·외부 재원 투입 시, 협약서 또는 공문(별도 양식 無)을 미제출하거나 협약기간 내 '창업중심대학 사업(기업)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'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

○ (투자금) 10억원 이상 투자재원 마련 (창업도약패키지 기본요건 충족)

*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은 예비, 초기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투자 가능

- 민간 VC 등 외부 투자기관의 재원을 활용하여 창업중심대학 전용 투자재원을 운용하는 경우도 인정

* 신청기관의 자체 자본금 활용(50%, 5억원 이상) 또는 일정 규모(15억원) 이상의 투자금 조성 시 가점 부여

○ (대응자금) 지자체 및 대학 자체재원 등을 활용하여 (예비)창업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한 최소 3억원 이상의 대응자금 (현금)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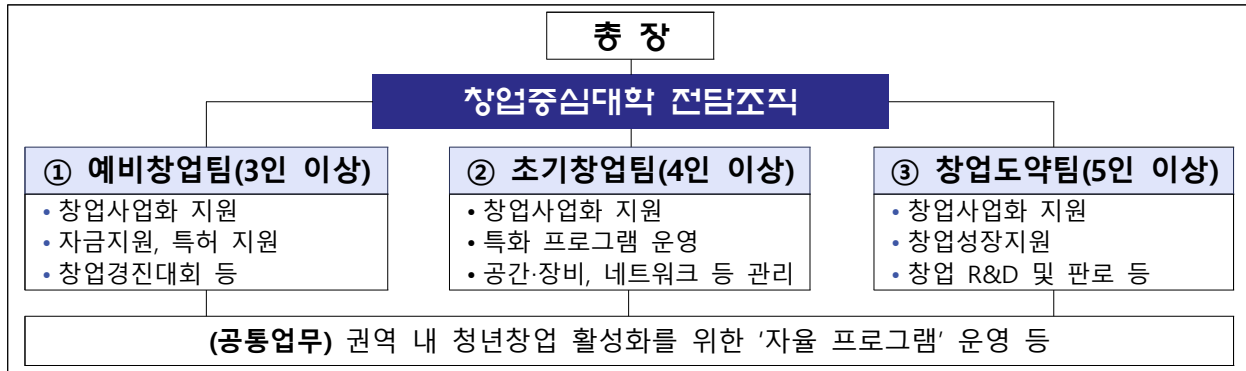
* 사업비 구성 시, 각 사업별 대응자금 최소요건을 필히 준수
(초기:1.8억원 이상 (현물 별도) / 도약:1억원 이상)

○ 투자금 및 대응자금은 협약 단위로 (매년)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요건이며, 기관의 재원 확보 규모는 평가 시 반영 가능

2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·운영
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7조의2에 의한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
 - *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은 신청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하나, 타 사업단 및 조직으로부터 독립성과 창업지원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

<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구성 (예시) >



- 예비·초기·도약 패키지 사업별 전담인력 (창업팀) 구성
 - 전담조직의 장 (1인)과 사업별 전담인력 (예비 3인 이상, 초기 4인 이상, 도약 5인 이상)으로 **최소 13인 이상**의 조직원을 구성
 - * 전담인력은 예비, 초기, 도약 사업별 업무를 '100% 수행하는 인력'을 의미
 - ** 기존 예비, 초기, 도약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(인력)을 보유한 경우, 해당 전담조직(인력)이 '창업중심대학' 업무를 필히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함
 - 각 사업팀별 전담인력 중 2명 이상 (창업도약패키지의 경우 3명 이상)은 반드시 창업 관련분야* **경력이 3년 이상인 자**로 구성
 - * 창업기업 관리·지원업무 수행,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, 대학 산학협력단, 전국 창업센터 등 창업유관기관 근무 이력 등 (음식점 등 소상공인 창업경력 제외)
- 전담조직의 장은 창업 (또는 창업관련분야)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·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
 - * 대학 교무위원 또는 학무위원급으로 구성
-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행정실 (사무공간) 필수 구축 (70m²(약 21평) 이상)
 - 전담조직의 장과 전담인력은 동일한 사무공간에 근무해야 하며, 전담인력 일부가 별도 부서 및 센터 (타 지역 포함)에서 근무 불가
-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 설치·운영을 위한 신청 요건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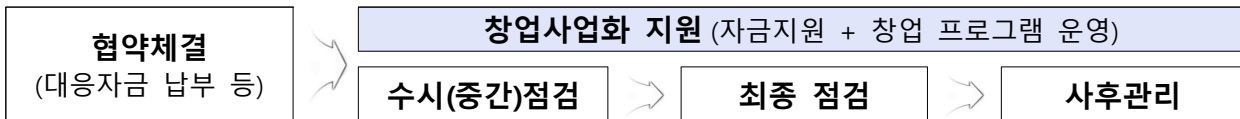
4

창업중심대학 의무 및 역할

1 (예비)창업기업 선발 및 사업화 지원

- (홍보 및 선발) 단계별 (예비)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 및 우수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 운영 등
- (사업화 지원)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지원 인프라(공간·인력·장비 등) 등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(예비)창업기업의 창업 사업화 지원
 - 선정된 (예비)창업기업의 사업계획추진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승인, 점검, 지원성과 관리 등을 수행
 - * 연간 총 85개사(예비 40개사, 초기 25개사, 도약 20개사 내외)를 발굴하여 지원 예정이며, 사업별 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 - 지역 내 창업환경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 및 청년 (예비)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선발

< (예비)창업기업 지원체계 >



2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신청기관이 보유한 역량, 지역 환경, 외부 여건 등을 분석하여 (예비)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

< 창업 프로그램 구성 >

구분	구성 내용		
기본 프로그램	▶ 예비, 초기, 도약 패키지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별 프로그램 구성		
	예비창업패키지 • 1:1 전담 멘토링제 • 창업 교육	초기창업패키지 • 선정기업 전용 프로그램 • 투자유치, 원스톱상담창구	창업도약패키지 •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특화 프로그램
자율 프로그램	▶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'기업가 정신 촉진'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 ▶ '창업 프로그램 운영비' 중 자율 프로그램 운영에 3억원 이상 필수 배정 (예비 1억원 이상, 초기 1억원 이상, 도약 1억원 이상 배정)		

- (기본 프로그램) 예비, 초기, 도약 사업별 필수 운영해야 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세부 운영 계획을 작성
 - 예비창업패키지 :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교육, 예비 창업자 1:1 전담 멘토링제 운영 계획 수립 등
 - 초기창업패키지 : 선정기업 전용 프로그램*,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유치프로그램(연합IR 1회 이상),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구성 등
 - * 창업아이템 검증,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(마케팅, 인증, 재무회계 등) 등
 - 창업도약패키지 : 3~7년차 도약기 창업기업의 매출 극대화 및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구성
- (자율 프로그램) 지역 및 청년창업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특·장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
 - 창업교류 협력 : 권역 내 타 대학, 창업지원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사업 연계 방안 및 협업 프로그램 등 구성
 - 창업문화 확산 : 청년창업 활성화(창업동아리 등), 연쇄창업 및 재창업 도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창업 행사,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구성
 - 창업역량 강화 :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전문 창업강좌 등 교육 및 멘토링·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
 - 기타 : 청년창업 정주 여건 마련(게스트하우스 운영 등), 투자유치 등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(예비)창업기업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

5

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1년 12월 16일 (목) ~ 2022년 1월 6일 (목), 16:00까지
-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 - (신청방법)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 →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
① 회원가입 (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) → ② K-startup 접속 →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→ ④ 사업 신청 클릭 → ⑤ '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' 클릭 → ⑥ 신청서 작성 필수값 동의(개인정보 등) → ⑦ 기본정보(일반현황 인력정보 등) 입력 →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300MB 유의) → ⑨ 제출 → ⑩ 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신청 확인(접수상태 '제출완료')

*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진행

- (제출서류) 제출 공문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참여 전담인력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 등

6 평가 및 선정 절차

□ 평가 방법 및 절차

- 2단계 평가 (① 서류평가 → (현장확인) → ② 발표평가)로 운영하며, 서류 평가 점수 50%, 발표평가 점수 50%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
- 서류평가 :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권역별 선정 규모의 3배수 (3개 대학) 내외를 선발하여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추천

* 전담인력, 사무공간, 투자재원 등 신청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- 현장확인 : 창업지원 인프라 및 제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현장 실사 (증빙 확인)하고 전담조직의 장 면담 예정

- 발표평가 : 권역 내 창업거점화 가능성, 청년창업 활성화 의지 등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 계획을 위한 전반적인 역량 종합평가

* 평가시간 : 45분 이내 (발표 25분, 질의응답 20분 이내)

**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변경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, '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의 장'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
- 단계별 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

사업 신청·접수	서류평가	발표평가	최종 선정
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~'22. 1. 6.(목)	사업계획서 평가 (현장 실사 및 면담) ~'22. 1월 4주	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~'22. 2월 2주	K-Startup 누리집 공고 '22. 2월 말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
- 서류·발표평가를 합산한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(사업운영위원회)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
- 단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규모와 달리 선발 가능

□ 평가지표(안)

< 창업중심대학 선정평가 기준(안) >
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기본요건 충족 여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청요건 충족 여부 (전담조직, 자원, 인프라, 프로그램 등) ▶ 신청자격 충족 여부 (신청대학 기준 및 신청 제한 해당 여부) 	(적/부)
서류 평가	사업 의지 및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의 사업 추진 의지, 창업친화적 제도 등 ▶ 창업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창업기업 지원 성과 등 	75
	창업중심대학 비전(전략) 및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중심대학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등 ▶ 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	25
	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권역 내 타 대학과 협력기관을 구성한 경우(2개 1점, 3개 이상 2점) ▶ 투자금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 경우 (50%, 5억원 이상) ▶ 투자금을 15억원 이상 조성하여 활용하는 경우 	최대 4점
합 계			104
평가 항목		평가 지표	배점
발표 평가	창업중심대학 비전 및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중심대학 비전 및 전략, 중장기 목표 및 달성전략 등 ▶ 창업중심대학 성과관리 방안 등 	15
	생애 전주기 창업지원	<p>< 기본 프로그램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기업 발굴 및 평가 계획 ▶ 예비, 초기,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프로그램 운영계획 	35
	권역 청년창업 거점구축 계획	<p>< 자율 프로그램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 프로그램 로드맵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▶ 창업교류 협력, 창업문화 확산, 창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대학의 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	45
	사업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비 사용계획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	5
합 계			100

* 상기 평가 지표(안)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신청 및 선정기관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예비·초기·도약패키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- * 협력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 신청 불가
-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은 접수 기간 내 (~'22.1.6.(목), 16:00)에 필히 완료해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
- 창업중심대학 전담조직의 인력구성 중 전담인력이란 '창업중심대학 업무만을 100% 수행하는 인력을 뜻함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다만, 신청 요건 중 대응자금 등 재원 확보, 창업중심대학 전담 조직 설치는 협약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- * 의무사항(신청 요건 등)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- ** 기한 내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지 가능
-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나, 협약은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과 신청기관 간 진행
 - * 모든 사업비(대응자금 포함)는 신청기관에서 관리·집행하여야 함
 - ** 협력 기관은 단독으로 창업중심대학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거나 '창업중심대학'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-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에서 각 사업별 (예비, 초기, 도약) 별도 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사업 운영 기간 내 대응자금 및 투자금 미집행 시,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및 예비·초기·도약 패키지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유사 취지의 정부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예산 등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해 참여의 제한, 예산 감액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8

기타 참고사항

□ 문의처

- (신청·접수 시스템 문의)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- (정책 문의)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-204-7952
- (사업신청 문의) 창업진흥원 창업평가총괄실 044-410-1908, 1901
 예비창업실 044-410-1801, 1803
 초기창업실 044-410-1831, 1832
 창업도약실 044-410-1861, 1863

※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(Quick Menu - 상담하기)

□ 사업설명회

- (개최일정) '21. 12. 23.(목) 14:00 ~ *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- (접속링크) <https://www.youtube.com/c/창업진흥원kised>
 -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설명회 개최 (예정)